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월지급액	비고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750,000원	1.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 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확정에 합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헌법연구관은 20만원을 뺀다.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500,000원	